

### 주민표 사본·인감등록증명서 등 교부 청구서

1. 어느 분의 증명이 필요합니까? 년 월 일

주소	자마시			
후리가나		생년월일		
성명 (구 성·통칭명)		년 월 일		

2. 어느 증명서가 필요합니까? 인감등록증 또는 자마시민카드 혹은 주민기본대장카드를 청구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인감등록증명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.

주민표(제표) 사본 ※제표 사본은 세대 일부로서만 발급됩니다.	세대전부(전원)	통	기재사항증명서 (시·반입)	세대전부(전원)	통
	세대일부(개인) □(제)	통		세대일부(개인)	통
인감등록증명서	인감등록증 또는 자마시민카드 혹은 주민기본대장카드의 번호를	No			통

3. 주민표 사본 등에 '관계·세대주 성명', '본적·필두자 성명' 등을 기재합니까?

기재할 항목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하십시오. <input type="checkbox"/> 관계와 세대주 성명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적과 필두자 성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[ ]	<input type="checkbox"/> 마이넘버(개인번호) 마이넘버를 기재할 때는 '6. 사용 용도 등'란에 제출처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.	외국 국적자 중 기재할 필요가 있으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하십시오.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적·지역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류카드 등 번호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류정보 (재류자격·재류기간 등·재류기간 만료일) 제삼자가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'관계·세대주 성명, 본적·필두자 성명,
--	---	--

4. 사용하는 분(청구자)은 누구입니까? 그 외의 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'6. 사용 용도 등'을 기입해 주십시오.

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※아래의 기입은 생략해도 됩니다 제표 사본 청구 시에 1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는 현주소를 기입하십시오.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 세대인 분 ※주소는 기입을 생략해도 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그 외의 분 ※대리권 등의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.
주소 또는 법인 등의 소재지	법인인	
성명 및 생년월일 또는 법인 등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	년 월 일	

5. 청구에 오신 분(청구 임무를 맡은 분)은 누구입니까? 그 외의 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'6. 사용 용도 등'을 기입해 주십시오.

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※아래의 기입은 생략해도 됩니다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 세대인 분 ※주소는 기입을 생략해도 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그 외의 분 ※대리권 등의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.
주소	년 월 일	
성명 및 생년월일	년 월 일	

6. 사용 용도 등 4.5의 청구 자격이 '그 외의 분'인 경우는 제출처와 이용 목적을 자세히 기입해 주십시오. 아울러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아래는 기입하지 마십시오

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○本人確認書類 【1点】 免  個番  旅  住B  在カ  障手  その他( )

【2点】 住A  保険  年金  介護  医療  生保

診察  キャ  図書  学生  社員  その他( )

委任状	受付	作成	交付	手数料
<input type="checkbox"/> 有				00円

印鑑番号の確認  作成者が確認後  すること

# '법인 등의 청구에 관한 필요서류 등'

## A. 청구서의 내용 확인

- 청구서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.
  - 법인 등의 명칭
  - 법인 등의 대표자 성명
  - 법인 등의 주된 사무소(본점, 지점, 영업소, 사업소 등) 소재지
  - 청구 임무를 맡은 분의 성명 및 주소
  - 청구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
  - 취득한 증명서의 이용 목적(가능한 한 자세히)
- 법인 등의 청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 주십시오.
  - 법인 등의 대표자인(인감등록이 완료된 회사인,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인(각인))
  - 청구 책임 부서 책임자의 개인 인감 등으로서, 법인 등의 조직적인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

## B. 청구 임무를 맡은 분의 본인확인서류

- '5. 청구에 오신 분'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마이넘버카드, 운전면허증, 운전경력증명서, 여권, 신체장애인 수첩, 주민기본대장카드(얼굴 사진 포함), 재류카드, 특별영주자증명서와 같이 관공서가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의 얼굴 사진이 포함된 본인확인서류를 하나 제시해 주십시오.
- 상기 본인확인서류가 없는 분은 복수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. 두 가지 이상의 본인확인서류(보험증과 연금수첩 등)를 제시해 주십시오.

## C. 청구 임무를 맡은 분과 소속된 법인 등의 관계확인서류

- '5. 청구에 오신 분'이 '4. 사용자 법인'에 소속된 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법인 등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의 자격증명서
- 법인 등의 대표자 이외인 경우  
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, 법인 등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

## D. 주민기본대장법 제 12 조의 3 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

- '4. 사용하는 분' 또는 '5. 청구에 오신 분'이 그 외의 분인 경우는 주민기본대장법 제 12 조의 3 에 해당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. (예: 상속으로 인한 청구 인 경우는 상속 관계를 알 수 있는 호적등본 등.)
- 해당 청구를 하는 분과 청구 대상자의 관계성 확인 서류  
당사자간의 계약서, 한쪽 당사자 측에서 작성한 서약서(채무자 성명과 채무 금액이 명시된 것)  
채권잔고증명서, 그 밖에 이용 목적이 정당함을 소명하기에 충분한 자료 등
- 지불 등이 지체된 사실 등의 확인서류  
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온 독촉장 등, 지정 계좌 등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그 밖에 이용 목적이 정당함을 소명하기에 충분한 자료

## E. 법인 등의 대표자 성명의 확인

- 대표자 성명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이것은 2008년 12월 19일에 총무성 자치행정국 시정촌과장이 각 도도부현 주민기본대장 담당과장을 대상으로

실시한 사무연락 '법인 등이 계약에 기초한 채권의 행사 및 채무 이행을 위해 주민표 사본 등의 교부를 신청한

경우의 대응에 대하여'에 기재된 내용입니다.